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36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 박상웅・김민전・유용원

김도읍 • 신동욱 • 김미애

박준태 • 이인선 • 박덕흠

고동진 · 최보윤 · 박정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 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 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산불은 시·군·구의 경계를 넘는 거대한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 진화 인력들이 시·도의 통합지휘 등으로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고 진화 과정에서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함.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통합지 휘한 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 · 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 · 군 · 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보상금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 지법 제6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생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		
	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ㆍ		
	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1항 본문		
	에 따른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